



월간 **2026년 7월호** 2026. 7. 29.

건설법제동향

법 률

- 이슈 1 : 진단은 정확하나 처방의 사정거리가 짧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 이슈 2 : 조속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선 최소화 기대

법 령

-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
-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참여 확대 및 계약기준 정비
- '26년 개발부담금 산정 적용 이자율 확정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 최근 약 한 달(26.6.29.~7.25.)간 국회에서는 평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총 595건의 법률이 새롭게 입법 발의되었으며,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법률안은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49개에 달해 건설산업과 관련된 지원 또는 규율 법률이 활발히 입법되었음.
- 이달 발의된 건설산업 주요 관련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확대된 실질적 지배력 기준의 모호성 관련 산업 내 적용 혼선과 관련된 보완 입법과 더불어 여러 산업 내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규율 입법안이 다수 제기됨.

이슈 1 진단은 정확하나 처방의 사정거리가 짧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지난 7월 8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9825호)은 ①도급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 의무 기재와 더불어 간접노무비 산출 대상인 ②배치기술인의 노무비 별도 구분 계상 의무를 부여한 입법안임.
 - 법안에서는 현행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도급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기에 일부 소액·단기 공사에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여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법정 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입법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법 도입에 따른 실익] 이 법안은 ‘총액계약 관행 → 내역계약 체계 전환’의 방향과 더불어 ‘특정비용의 별도 계상 의무화’라는 기존 입법 계보¹⁾에 건설기술인 노무비를 새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 즉, 적정공사비 확보 담론과 건설기술인 처우 개선 담론이 결합된 형태로 다음과 같은 실익이 예상됨.
 - 입법을 통해 민간공사에서 만연한 총액계약 관행이 내역계약 체계로 전환되고 법정 배치 건설기술인의 직접 계상 원칙이 적용된다면,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기준 자료 확보가 가능하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보험료 등.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법정 배치 인력의 인건비가 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어 시공사가 이를 자체 부담하는 경우가 감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예상된다.

- 또한, 현행법 체계가 이미 ‘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명시(\$22⑦)’, ‘직접시공의무 계상의 총노무비 기준(시행령 \$28)’, ‘임금 압류 금지를 위한 임금 상당액 산정(\$88)’ 등을 통해 ‘산출내역서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모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법 제정의 취지는 합당하다고 사료됨.

- [법안의 한계] 허나 입법안은 ‘내역 작성 의무를 통한 적정 공사비 보장’의 인과 고리가 실증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 수단·산정기준·원가체계 정합성 등에서 한계가 존재함.

- (내역 작성 의무 한계①) 발주자가 낮은 총액을 먼저 정해두고 내역을 역산하여 단가를 조정하면 법 요건은 그대로 충족되기에 산출내역 작성 의무는 형식(투명성) 규율이지 가격수준(적정성) 규율이라 할 수 없음. 오히려 ‘합의된 내역서가 존재한다’라는 점이 한계가 되어 사후 조정청구 시 불리한 형식적 정당화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음.
- (내역 작성 의무 한계②) 법안의 경우 현행 표준도급계약서가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에 기초하여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재 의무’라는 형식적 요건 부과에 머물러 있고, 위반 시 제재(과태료·시정명령 등), 계약의 효력, 발주자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기에 진단한 함정에 처방이 다시 빠지는 악순환 구조임.
- (내역 작성 의무 한계③) 공사 규모·기간·계약방식(총액입찰/내역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단가계약/개산계약 등) 구분 없이 일률 적용될 수 없는 문제를 간과함. 일례로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 유지보수 단가 계약, 긴급공사, 소규모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 절차 지연과 형식적 준수만이 남을 가능성이 큼.
- (배치기술인 직접 계상 한계①) ‘얼마를 계상해야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 배치기술인의 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상이하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 계상 기준이 없어 발주자는 과소 계상할 유인이 충분함.
-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기능인력의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법안은 기술인에 대한 직접 계상을 고려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산정기준이 필요함에도 하위법령 위임 구조 설계를 제안하고 있지 않아 산정기준의 공백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²⁾
- (배치기술인 직접 계상 한계②) 현장대리인 등 법정 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 원가계산 체계상 통상

2)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기술인 평균임금(1인 1일 기준)을 통한 계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한 임금 통계조사 결과의 시공 배치기술인의 직접 적용은 적합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산정기준 마련이 하위법령 위임(위탁사무)을 통해 필요함.

간접노무비(요율 방식)으로 처리됨에도 이를 별도 직접계상 항목으로 분리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직접 계상, 혼합 방식, 요율 계상) 중 직접 계상 방법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당해 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산정되는 예정가격 작성 시기를 함께 고려할 때 간접노무비 외 다른 항목을 삭감할 유인이 생겨 총액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부재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같은 구체적인 원가계산 체계가 부재하며 대부분의 민간 발주자의 작성 역량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총액에 맞춘 형식적 내역서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실무상 시공사가 대신 작성하고 발주자가 서명하는 형태가 되어 규제 취지와 반대 결과(시공사 부담 증가)만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더욱이 이번 법안은 적정 공사비 산정의 책무가 발주자에게 일원화하는 선진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진석 의원이 이미 입법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 대비 구체성·실효성 측면 후퇴된 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경우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의 책무가 영국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전 검증(공공공사인 경우 심의, 민간공사인 경우 검토)을 통해 이를 사전 확인하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제공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개정안 추진 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임.

이슈 2 | 조속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신 최소화 기대

-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전 산업에 걸쳐 원청의 사용자 인정 범위에 대한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 인정과 교섭 범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이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건수는 458건에 달하는 상황이며, 이 가운데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극소수에 불과하여 대부분 폭넓게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도 중노위는 ‘산업안전’ 판정에서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어 산업에서는 노동계가 이를 빌미로 교섭에 참여한 다음 임금·근로 조건으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는 경우와 이를 거부하면 이루어질 쟁의행위를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에 따라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사방에서 노란봉투법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쟁의행위 기준을 정리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함.
 - 하지만, 법을 개정해 확대한 ‘사용자성 개념’과 ‘교섭 범위’를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위헌 논란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큼.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분쟁 당사자는 일정 수준 이상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지노위·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 소 제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의 경우 이러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선 속 ‘산업안전’이 사용자성 다툼의 최전선으로 작용 중임. 구조적으로 건설업은 임금·성과급·채용은 하청의 결정권이 크지만, 작업지시·공정운영·안전관리·휴게위생시설 설치 등은 원청의 관여도가 법적·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임.
 -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64조(협업체·순회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등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어, ‘법이 규율하고 있어 준수한 안전관리’가 그대로 ‘실질적 지배력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즉, 다음 표와 같이 건설산업에서의 원청은 3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원청 지위’ 개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규율하고 있어 같은 행위(현장 안전 지시)가 법률에 따라 의무이자 위험이자 지위 창설 사유가 되기 때문임.
 - 물론 법원은 그간 협업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이므로 파견적 요소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안전보건 활동이 사용자 징표나 불법파견 징표로 오인돼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가 소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으나, 노조법 영역에서는 해당 ‘차단 법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구조적 공백에서 발생한 사항임.³⁾

〈표 1〉 법률별 건설업 원청 지위 개념

법률	원청에 요구하는 행위	그 행위의 법적 귀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지시·점검 의무 부여	미이행 시 형사처벌
파견법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위·명령 금지	위반 시 불법파견·직접고용의무
노란봉투법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일 경우 사용자성 인정	교섭의무·부당노동행위 책임

- 이에 대해 원청·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 이행이 ‘실질적 지배력’의 해당 여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반복하고 있음.

3) 노동법률,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 원청 의무는?”, 노동법률 2022.10.13. 언론기사 등 참조.

- 원청·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이 강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된다면 법령 준수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이며, 이는 곧 법률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당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노동계는 원청이 실제로 현장을 지배·관리하기에 안전 문제의 결정권도 원청에 있고, 그것이 곧 실질적 지배력의 실체란 입장임.⁴⁾
-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입법부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잇따른 사용자성 명확화의 후속 입법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법률이 입법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임.

〈표 2〉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 의제 관련 수정 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발의일)	대표 발의자	핵심 내용
18736호(4.30.)	김소희 의원	도급·용역 위탁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의 지배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화
19409호(6.22.)	김위상 의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 해소 및 법적 명확성 제고
19567호(6.26.)	이진숙 의원	실질적 지배력 관련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권 및 청년 취업 기회 보호
19620호(6.30.)	유상범 의원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제외
19925호(7.13.)	김태규 의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 규정 정비
20004호(7.16.)	나경원 의원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현행 노란봉투법은 제조업을 염두에 둔 법률 내용으로 건설업의 생산구조와 불일치되는 면이 크며, 대화 촉진이 아닌 분쟁 양산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 법률 개정을 통해 혼선이 촉발되었기에 행정 규범 마련을 통해 이를 재단할 경우 위헌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조속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4) 이를 종합해 보면, 규범 목적의 차이가 충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는 위험원 지배(Control of Risk)를 근거로 하고,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은 근로조건 결정권(Control of Terms)을 각각 근거로 두기 때문에 두 개념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관계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시 두 규범 목적의 단순 사실 나열은 중복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중노위 등에서 이를 구별해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6.6.29.~7.26.)

※ **규제 또는 처벌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9606호(이재관 의원 등 11인)] ('26.6.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중 -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612호(박수민 의원 등 10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 -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설계변경,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제안방향)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상생 협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613호(하성무 의원 등 12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공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 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국내 중소기업 보호하고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안 제21조)
「하도급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615호(김남근 의원 등 11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건설공사의 수행이 해외 현장으로 확대되고 국내 원도급자가 국내 하도급자에게 국외 공사를 위탁하거나, 국내 원도급자의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하도급자 등과 건설위탁을 체결·이행하는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하도급 거래임에도 거래 장소·계약 형식 또는 당사자 구성을 이유로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현행법상 규율을 잠탈할 우려 ▪ 특히, 원도급자가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국내 하도급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적 보호나 국내 법원에서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당하는 사례 발생 ▪ 국제중재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중소 하도급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절차로서 이를 전속적 관할로 강제하는 특약은 하도급자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 ▪ 또한, 국외 건설위탁 거래는 그 특성상 준공·정산·하자보수 등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 수집 및 피해 사실의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23조의 조사개시 대상 기간이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 - (제안방향)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해서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연장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해서도 이 법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해외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하도급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의8제1항) ▪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이 법에 따른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로 보아, 원도급자 계열 외국법인을 통해 이 법의 적용 회피를 방지(안 제3조의8제2항) ▪ 국외 건설위탁에 관해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은 하도급자의 법적 구제를 실질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조의4에서 정한 부당특약으로 보아 그 효력 부인(안 제3조의8제3항) ▪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23조를 적용하는 경우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로 규정(안 제3조의8제4항)
「하도급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616호(하성무 의원 등 12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 - 그런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누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비용·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변경위탁 계약 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안 제3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의안번호: 제19620호(유상범 의원 등 21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각급 노동위원회는 법률의 원천에 부여한 산업안전 관련 의무마저 사용자성의 인정 근거로 확대해석하고, 거대 노조는 개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행법이 노사 질서의 왜곡과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 제기되는 실정 - 또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조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용자의 행위만 규제하면서 이

법률명	주요 내용
	중처벌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침해하고 양측 권리·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 제기 - (제안방향)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안 제2조제2호·제5호, 제42조제1항 등)
「공공주택 특별법」	• [의안번호: 제19630호(전용기 의원 등 10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현물보상 제공 중 - 그러나 이와 같이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의4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의안번호: 제19637호(천준호 의원 등 10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중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 중 ▪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 지적 - (제안방향)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9641호(용혜인 의원 등 11인)] ('26.6.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부산 반안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최초 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 등이 훼손·변경되어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차별 강화	장기간 방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소방시설 등의 공사·감리업자 또는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최초 점검을 수행함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부실공사·감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대형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화재 당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계인이 최초 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시공사로부터 의뢰 받은 전문업체가 최초 점검을 시행하여 사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 - (제안방향①) 관계인이 최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 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 - (제안방향②)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을 공사·감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 점검 수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가계약법」 규제·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9729호(김종양 의원 등 10인)] (‘26.7.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 - (제안방향)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지방계약법」 규제·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9730호(김종양 의원 등 11인)] (‘26.7.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 - (제안방향)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9742호(이달희 의원 등 10인)] (‘26.7.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 - (제안방향)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안 제7조제1항)
「상생협력법」	• [의안번호: 제19752호(권향업 의원 등 13인)] (‘26.7.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 중 -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체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제기 ▪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법률명	주요 내용
	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 증대 - (제안방향)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주차장법」	• [의안번호: 제19768호(이종욱 의원 등 11인)] ('26.7.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9777호(최은석 의원 등 18인)] ('26.7.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 중 -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7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9779호(최은석 의원 등 17인)] ('26.7.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 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으로 규정 중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실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 신설(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606호(이재관 의원 등 11인)] ('26.7.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 또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연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의 조종기사에 대해 현장 출입을 관행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법률명	주요 내용
	손실과 기술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안 제2조, 제68조의3, 제68조의5, 제68조의6 등)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809호(이훈기 의원 등 10인)] ('26.7.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 - (제안방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안 제129조 등)
「건설산업 기본법」	• [의안번호: 제19825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6.7.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을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닌 상황 - (제안방향)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개정(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중대재해 처벌법」 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9829호(김남근 의원 등 16인)] ('26.7.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조)

법률명	주요 내용
「지방 공기업법」	• [의안번호: 제19843호(복기왕 의원 등 15인)] (‘26.7.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 발생 중 - (제안방향)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 [의안번호: 제19845호(복기왕 의원 등 14인)] (‘26.7.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 중 -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 중 -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현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 발생 중 - (제안방향)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안 제52조의3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 [의안번호: 제19874호(김종양 의원 등 11인)] (‘26.7.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안전사고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62조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 [의안번호: 제19876호(김종양 의원 등 11인)] (‘26.7.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 (제안방향)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 [의안번호: 제19877호(김종양 의원 등 11인)] (‘26.7.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법률명	주요 내용
	며, 레미콘·타워크레인·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 (제안방향)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9880호(배준영 의원 등 10인)] ('26.7.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지정 - 그러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47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885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6.7.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행사하는 구상권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 -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담보책임 소송이 장기화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구상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사태가 실제 소송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 그 결과 분양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구상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 지적 - 정부는 2025년 9월 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하였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예상 - (제안방향) 분양자가 현행법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양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하천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919호(김용태 의원 등 10인)] ('26.7.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시설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중

법률명	주요 내용
	- 그런데 하천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하천의 치수 기능 및 수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 ▪ 특히,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실정 - (제안방향)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하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3조 및 제7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의안번호: 제19925호(김태규 의원 등 10인)] ('26.7.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 규정을 정비(안 제2조제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9966호(정부)] ('26.7.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①)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 변경 - (제안이유·방향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선 방지 ※ 본 법률안은 정부가 함께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 전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9967호(정부)] ('26.7.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제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스스로 감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제안이유·방향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 ※ 본 법률안은 정부가 함께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6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 전제

법률명	주요 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9968호(정부)] ('26.7.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①)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 변경 - (제안이유·방향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완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 방지 ※ 본 법률안은 정부가 함께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 전제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9990호(김정재 의원 등 10인)] ('26.7.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문업체 보호구간을 2억 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보호요구로 보호구간이 계속 상향 연장되면서 중소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 3천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놓아 종합업체의 일반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 -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진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의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는 장기간 수주 기회 상실로 도산 우려 - 한편, 전문건설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소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이 도래하고 있어 영세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장잠식 우려가 큰 실정 - (제안방향)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업체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체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 제거(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의안번호: 제20004호(나경원 의원 등 16인)] ('26.7.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 상존 -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 - 아울러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 삭제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

법률명	주요 내용
	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안 제2조제2호 후단) ▪ 노동쟁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안 제2조제5호) ▪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안 제90조)
「국가계약법」	• [의안번호: 제20007호(김종양 의원 등 10인)] ('26.7.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 제기 - (제안방향)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 증대 유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건축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008호(김종양 의원 등 10인)] ('26.7.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 -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20012호(복기왕 의원 등 13인)] ('26.7.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가구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 -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소득 기준(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과 공제 한도(연간 1,000만 원)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근로자 가구들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되, 주거 취약 지대에 놓인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 (제안방향)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안 제95조의2제1항 등)

법률명	주요 내용
「하천법」	• [의안번호: 제20023호(강승규 의원 등 11인)] ('26.7.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031호(박지원 의원 등 11인)] ('26.7.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 중 -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제안방향)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토록 개정(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032호(이종배 의원 등 11인)] ('26.7.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 발생 - (제안방향)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해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036호(박지원 의원 등 12인)] ('26.7.20.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 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 중 - 이에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분리된 구조로 인해 효율적 환경체계 구축에는 한계 발생 ▪ 특히,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풍향, 일사량, 부지확보, 주민 수용성 및 계통연계 여건 등 입지적 특성에 따라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를 가진 첨단사업과 국가기간산업은 수도권 등 수요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 이로 인해 장거리 송전망과 송·배전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고,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도 반복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중 - (제안방향)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배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

법률명	주요 내용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RE100 전환 수용에 대응하는 산업입지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지역 내 활용도를 높여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 -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6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8조) -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 전력계통연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5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보육·교육·의료 분야 관련 특례 마련(안 제45조부터 제62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권자, 관리기관, 입주계약, 입주계약의 해지, 건축물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3조부터 제72조) -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설치 가능(안 제7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차별 강화	[의안번호: 제20037호(윤준병 의원 등 15인)] (‘26.7.20.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 - 그러나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러한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이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장 동력을 한순간에 앗아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조치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지속 반복 - 또한,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 사법 체계하에서는 기술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극도로 어려워 실제 배상액이 미미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 존재 -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개발 비용은 기업의 생존에 걸린 직접적인 손실임에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제안방향)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의안번호: 제20049호(최수진 의원 등 10인)] ('26.7.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 발생 - (제안방향)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본 법률안은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 전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 [의안번호: 제20050호(최수진 의원 등 11인)] ('26.7.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안 별표 제223호 신설) ※ 본 법률안은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 전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058호(전종덕 의원 등 11인)] ('26.7.2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공지능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증강 기술의 확산은 일부 직무의 대체뿐만 아니라 직무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 중 - (제안방향)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 강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4호 카목 신설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의안번호: 제20073호(서영석 의원 등 10인)] ('26.7.2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중이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선주 등으로 인해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법률명	주요 내용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제안방향)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48조)
「환경영향평가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093호(윤준병 의원 등 11인)] ('26.7.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①)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 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 정비 - (제안방향②)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116호(박형수 의원 등 21인)] ('26.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그러나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은 항공기 소음이라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적·구조적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에도 장애가 될 우려 - 한편,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종전부지 지역은 부지 개발을 통해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이전주변지역으로 그 이익이 환류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121호(박형수 의원 등 21인)] ('26.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토록 규정 중 - 그런데 이 방식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보상·설

법률명	주요 내용
	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이유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①)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개정 - (제안방향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조 등)

전영준 연구센터장



02-3441-0793



yjjun@cerik.re.kr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동향

종합개요

- 이달 주요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입법·고시 현황을 종합하면, 총 38건의 제도 정비가 추진됨.
 - [시행·고시] 산업안전보건, 주택건설기준, 기상특보, 공공임대주택, 개발부담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등 현장 안전·주택공급·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기준이 시행 또는 고시됨.
 - [입법·행정예고] 국가계약, 건축, 부동산개발, 주택·도시계획, 산업안전보건, 조달청 계약업무 등 다수의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공공공사 수주·인허가·안전관리·주택공급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정비가 예고됨.

구 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시행·고시	3	2	2	2	5	-
입법·행정예고	12	6	2	-	3	1

- 주요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공급 및 개발사업 추진기반 정비, △공공계약·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건설현장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기준 구체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됨.
 - [주택공급 및 개발사업 추진기반 정비] 주택건설기준, 주택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중형 평형 비율 확대, 작은도서관·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부동산개발사업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함.
 - [공공계약·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국가계약법령과 조달청 계약·발주 기준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 조정, 폐이퍼컴퓨터·담합·심사 포기자 제재 강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금액·비율 공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여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와 입찰 질서 정비를 병행함.
 - [건설현장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기준 구체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기준, 화재감시자 업무, 지하작업장 가스농도 측정, 한파작업 보건조치 등을 정비함. 또한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완화,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 확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정비 등을 통해 특수시설·건축자재·공동주택 품질관리 기준을 보완함.

- 이런 달 하위법령 개정 흐름은 주택·개발사업의 공급 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계약의 투명성·공정성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 따라서, 건설기업 및 디벨로퍼는 비아파트 공급 완화, 중형 공공임대 확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개발부담금·기본형건축비 기준 등 사업 추진 관련 제도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국가 계약·조달청 발주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발주 공고 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품질 관리 기준 변화에 대응하여 수주·계약·안전보건·설계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하위 법령명	소관부처	공고(공포)번호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3460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26-36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3647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870호
	「주택법 시행령」		제2026-87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873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2026-880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89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26-90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90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910호
	「건축법 시행령」		제2026-9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제2026-202호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제3643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제2026-131호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41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6-34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6-36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6-3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2026-807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6-92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제2026-2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제625호
행정 규칙	훈령	국토교통부	제2026-1966호
		조달청	제2396호

구 분	하위 법령명	소관부처	공고(공포)번호
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026-382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73호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6-55호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6-318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2026-332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제2026-36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고시」		제2026-370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2026-37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2026-906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2026-976호
지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제2026-897호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6월 30일 제정함.
 - 건설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주요 항목별 산정·집행 기준을 구체화함.
 - 기존에는 항목별 산정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발주자별 계상 금액 편차와 현장 활용도 저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매뉴얼을 통해 공사·규모별 평균 금액대, 계상 우수사례, 집행·정산 기준이 제시됨.
 - 건설기업은 입찰·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을 확인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사용 목적에 맞는 집행과 증빙자료 관리를 강화하여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집행에 따른 정산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자료명	발행기관
실무 매뉴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자료 : 국토교통부(2026.6.30.),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보도자료.

1 주요 하위법령 개정 현황 : 7월 시행 법령

• 「^①기상법 시행령」 :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6월 30일)

-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특보 체계에 ‘중대경보’ 단계를 신설하고, 열대야 특보 기준을 마련한 개정임. 이를 통해 기존 폭염 특보 체계를 세분화하고, 폭염 및 열대야 상황에 대한 예보·경보 기준을 구체화한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기준으로 정비됨. 또한 폭염 특보 종류에 열대야가 신설되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지역별 발효 기준값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대야 주의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본 개정이 직접적인 공사중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폭염중대경보 도입과 연계하여 건설현장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영향이 있음.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됨에 따라, 하절기 공정계획과 작업시간 운영 기준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건설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추락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⁵⁾ 따라서 건설기업은 기상 특보 기준을 단순 예보 정보로만 보지 않고, 현장 안전보건 계획, 작업중지 판단, 휴식시간 운영,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협력업체 안전관리와 연계한 혹서기 대응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폭염 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하절기 현장 섣다운 기준 정비 및 공기·원가 리스크 선제적 관리 필요
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폭염·열대야 특보 기준 세분화 및 사문화된 기존 특보 기준 정비
주요 내용	• 폭염 특보에 ‘중대경보’ 신설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 예상 시 발령 • 폭염 특보 종류에 ‘열대야’ 신설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되고,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지역별 발효 기준값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대야 주의보 발표 • 한파 및 폭염 관련 사문화된 특보 기준 삭제

•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6월 30일)

5) 고용노동부(2026.5.29.),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와 건설현장 폭염 대책 총력 대응 선언”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6.6.29.), “노동부장관-전국 지방관서장, 온열질환·추락 위험 건설현장 일제 불시점검” 보도자료.

-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위해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산정기준,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임. 이를 통해 도시지역 주택단지의 소음 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위해시설 등과의 거리 산정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합리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6층 이상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과 관계없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됨. 이에 따라 도시지역 공동주택 사업에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적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음.
- 위해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시설의 외곽경계선, 즉 담·벽의 외측면 또는 담·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됨. 또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중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m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됨. 이에 따라 설계 및 인허가 부서는 사업지 주변 위해시설의 경계, 소음배출시설 위치, 외곽경계선과의 거리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거나 주택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이 마련됨. 본 개정령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소음·이격거리·주민공동시설 계획을 개정 기준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도시지역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완화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합리화
배경	공동주택 건설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정비
주요 내용	• 도시지역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예외 대상의 주택단지 면적상한 30만㎡ 폐지 • 위해시설 등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 산정 시 외곽경계선 기준 명확화 - 담·벽이 있는 경우 담·벽의 외측면, 담·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 기준 • 공장 내 소음배출시설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된 경우, 해당 공장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배치 허용 • 주택단지 경계 300m 이내 또는 단지 내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허용

• 「^③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 :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7월 3일)

- 그간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기준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임.

-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지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형 평형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됨.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중형 평형을 포함한 공급계획 수립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
- 공공주택 사업자와 설계·사업계획 부서는 지구별 수요 특성, 다자녀가구 및 중산층 주거수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평형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형 평형 공급비율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형 중심 공급계획을 보완하여 수요 대응형 평형 배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본 개정훈령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향후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개정된 건설비율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기준 조정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시공 단계보다는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설계사, 시공 참여 예정 기업의 사업계획 및 설계 검토 단계에서 실무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상품구성 다양화 및 주거수요 대응력 강화
배경	소형 평형 위주 공급의 한계 탈피 및 중산층·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필요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 평형 구성 및 공급계획 수립 여지 확대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하한 조정 : 80% 이상 → 60%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 확대 : 20% 미만 → 40% 이하

• 「^④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확대·계약기준 정비(7월 1일)

-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정비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자료 첨부 기준과 본·지방청별 사무분장 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임. 이를 통해 시설공사 계약 절차의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 지역소재 사회적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개정규정은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특례에 지역소재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추정가격 구간별로 지역소재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함께 사회적기업이 수요기관 추천 또는 견적경쟁 대상에 포함되며, 소규모 시설공사에서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계약요청서 접수 단계에서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첨부하도록 기준이 신설됨. 또한,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소관청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역서상 금액 비중이 큰 관할 지역의 소관청이 담당하도록 하여, 다지역 공사의 업무분장 기준이 명확화됨.
- 본 훈령은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는 소액수의계약 특례 대상 확대와 견적경쟁 대상 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

주·계약 부서는 지역소재 사회적기업 해당 여부, 수의계약 금액 구간, 다지역 공사의 관할 소관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해당 여부를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해야 함.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사회적기업의 소액수의계약 참여기회 확대 및 다지역 시설공사 계약 기준 명확화
배경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대상 확대 및 시설공사 계약 업무 절차상 모호성 해소 필요
주요 내용	- 소액수의계약 특례 대상 및 건적경쟁 참여 대상에 '지역소재 사회적기업' 신규 추가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추진 시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자료 첨부 기준 신설 - 공사현장이 2개 이상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내역서상 금액 비중이 큰 관할 소관청이 담당하도록 사무 분장 기준 명확화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26년 개발부담금 산정 이자율 확정(7월 1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해야 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2026년 적용 이자율을 확정된 고시임. 이를 통해 정상지가상승분, 조기 납부 환급액,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가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번 고시는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을 위한 정기예금 이자율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 산정 요율을 각각 연 1천분의 25로 정하고,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금 산정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로 정함.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개발부담금 산정, 조기 납부, 납부 연기·분할납부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이자율을 반영해야 함.
- 개발사업 및 재무부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금 사정에 따라 조기 납부 또는 납부 연기·분할납부 선택 시 환급액과 가산금 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발사업의 준공·부과 시점, 현금흐름, 금융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전략을 수립하는 실무 검토가 요구됨.
- 본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적용 이자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됨. 따라서 해당 기간 중 개발부담금 산정, 조기 납부,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검토하는 사업자는 확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부담금 관련 재무 시뮬레이션과 납부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개발부담금 산정·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 확정에 따른 개발사업 재무관리 기준 명확화
배경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국토부 장관 매년 결정·고시 의무 이행
주요 내용	- 정상지가상승분 산정 이자율 및 조기 납부 환급액 산정 요율 연 2.5%(1천분의 25) 적용 -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가산금 산정 이자율 연 3.1%(1천분의 31) 적용 - 적용기간: 2026. 7. 1. ~ 2027. 6. 30.

2 주요 하위법령 개정 현황 : 입법 · 행정예고 법령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의계약 한도 상향·공공공사 낙찰제도 정비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시설·장비 계약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허용, 부실 입찰자 관리,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개정안임. 이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 추진과 공공계약의 신뢰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의 물품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제조·구매·임차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함.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 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관련 장비 도입 및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업에는 공공공사 낙찰제도 정비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 대상 금액 기준이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입찰·투찰 전략과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부실 입찰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됨. 본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다만, 제42조제4항 및 제86조제6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공공공사 참여 기업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적용 여부, 심사서류 제출 관리, 심사 포기 시 제재 가능성, 300억 원 기준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지역기업 지원 확대 및 공공공사 낙찰제도 정비를 병행한 국가계약 기준 전면 개편
배경	비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판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속 추진 및 부실 입찰자 관리 강화 필요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계약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5천만 원으로 상향 •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 연구개발사업군의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허용 • 부실 입찰자 의심 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미적용 근거 마련 •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 대상 금액 기준 상향: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상 • 동점자 발생 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 기준 신설

- 「^②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기준 마련
 -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

치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운용상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인·허가 절차·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인·허가 지원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지원센터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부동산개발사업자와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인·허가 법령 해석,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지원 창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음. 다만, 본 개정안은 인·허가 자체를 자동 승인하거나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개발사업자는 지원센터 신청 전에 쟁점 법령, 협의 대상, 사업계획 자료, 지자체와의 이견 내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개정령안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므로, 개발사업·인·허가 담당 부서는 시행 이후 지원센터 활용 가능성과 전문기관 지원 절차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법령 해석 및 이견 조정을 위한 공식 지원체계 마련
배경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위임사항 구체화 필요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시행자·지자체장의 지원 신청 근거 마련 • 지원센터의 45일 이내 결과 통보 및 1회 연장 가능 기준 신설 • 사업시행자·지자체·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전문기관의 매년 사업계획·추진실적 보고 기준 마련

• 「^③건축법 시행령」 :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 완화

- 현행 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하는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의 규모가 크고 그 수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공장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설비배관 전용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임.

-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 설치를 위해 구획된 전용 부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 제46조제2항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쳐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가 대상임.
-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공장 설계·시공 단계에서 대규모 수직 설비배관 공간의 방화구획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완화 대상은 모든 공장이나 모든 설비공간이 아니라,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전용 부분 중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와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되므로, 설계·소방·인허가 부서는 성능위주설계 검토 결과,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계획, 방화구획 계획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방화구획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이 의제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됨. 따라서 반도체공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진행 중인 인허가 건에 대해 개정 기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설비배관 전용 부분의 소방성능 확보와 방화구획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반도체공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설비배관 전용 부분 방화구획 기준 합리화
배경	대규모 다수 수직 설비배관을 갖는 반도체공장에 대한 일률적인 층간 방화구획 적용 한계 극복
주요 내용	•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 건축물의 설비배관 전용 부분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적용 완화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검토·평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완화 적용

• 「④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 및 한파작업 보건조치 강화

- 화재·폭발 위험 예방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한파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임.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과 혹한기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음.
- 개정안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에게 작업 중 불꽃·불티 비산 여부와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종료 후 잔여 불꽃·불티 및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추가함. 또한,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분해 등으로 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을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 조정 시 감전·전도·붕괴 등의 위험예방 조치 기준을 정비함.

-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용접·용단, 지하 작업, 콘크리트 타설, 안전난간 설치 등 주요 고위험 작업의 사전점검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실무적 영향이 있음. 현장 안전관리 부서는 화재감시자 배치 및 업무 수행 여부, 지하작업장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콘크리트 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간 간격 확보,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 기준을 작업계획서와 현장점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파작업과 관련해서는 한파를 저체온증·동상·동창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상현상으로 정의하고, 한파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작업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장해 증상·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사전에 알리도록 함. 또한,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장갑·신발·모자 착용을 지도하고, 작업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며,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함. 본 개정규칙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건설기업은 혹한기 작업관리 기준과 고위험 작업별 안전조치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 안전조치 구체화 및 하절기/동절기(한파) 보건관리 의무 강화
배경	화재·폭발,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고, 한파 노출 등 현장 산업재해 예방 기준 정비 필요
주요 내용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불꽃·불티 비산 및 화재 발생 확인 업무 추가 •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 구체화 및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안전조치 정비 •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 의무 합리화 및 감지·경보설비 설치 요건 정비 • 화학설비 사용 전 안전장치 점검 기준 및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 기준 명확화 • 한파 정의 및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 「^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공고기준 및 복합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정비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입찰정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가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공법의 적용 금액 및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임. 또한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개정고시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 대비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적용 금액과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함.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공고 단계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공법의 시공 가능성, 하도급 제한 규정과의 관계, 견적 및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합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공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도록 정비됨. 특히 전문공사로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계약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건설업체는 공종 구성과 공동계약 허용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 참여 방식과 협력업

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일부개정안은 2026년 7월 2일 행정예고 되었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2일까지임. 개정고시안 부칙상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조달·영업·건설 부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의 공고문 기재사항, 복합유지보수공사의 주된 공사 업종 및 구성비율, 공동계약 허용 여부를 입찰 검토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와 복합유지보수공사의 입찰공고 정보 명확화
배경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방지 및 공정한 수주경쟁 환경 조성 필요
주요 내용	• 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 발주 시 공사예정금액 대비 적용 금액 및 비율의 입찰공고문 기재 의무화 • 복합유지보수공사 발주 시 공종 간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공사·전문공사 구분 발주 기준 정비 •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필요시 공동계약 허용 • 복합유지보수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의 입찰공고문 기재 의무화

3 전체 하위법령 개정 현황 : 시행 및 예고 법령 종합 요약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반복적인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신규 추가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합계가 1만 3천 명 초과 시, 1만 3천 명당 직업환경의학과의 전문의 1명씩 추가 확보하도록 인력 기준 합리화	'24.7.1. (단, 혼합기 등 안전검사 규정은 '26.6.26.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기준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복 공표 방지 조항(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삭제 •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에 염화티오닐 전해액을 사용하는 '리튬전지 제조업' 신규 추가 •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을 '기타 전문서비스업'에서 '전문서비스업'으로 수정하여 현장의 해석 혼란 방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변경에 맞춰,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강의시간 주기를 '분기별 12시간'에서 '반기별 24시간'으로 정비	입법예고 중 ('26.7.14. 공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6층 이상)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 예외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30만㎡ 미만)과 관계없이' 전면 허용토록 기준 완화 • 공동주택과 공장·위험물 등 위해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경계를 '담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화 • 공장 내 소음배출시설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된 경우,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50m에서 25m로 완화 • 인근(300m 이내) 또는 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이 있는(계획된)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 합리화	'26.6.30.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영 시행일 이전 준공된 공실 지식산업센터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7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입지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법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1제곱미터 미만의 수 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중복 위임 규정(제133조제1항제3호) 삭제	입법예고 중 (‘26.6.29. 공고)
	「주택법 시행령」	• 도심 내 신축한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택 사용 층수 제한을 기존 5개 층에서 6개 층으로 완화(단,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5개 층 유지)	입법예고 중 (‘26.6.29. 공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주차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확보 의무 범위를 기존 최대 50%(전용 60㎡ 이하 기준)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 1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의무인 주민공동시설을, 단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동일·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 면제 허용	입법예고 중 (‘26.6.29. 공고)
	「주차장법 시행령」	•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영 시행일 이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을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 한시 면제 •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할 수 있는 금지 기간을 '1개월(운행 불가 차량은 15일)'로 규정 • 공공 주차장 장기 무단주차 위반 시 1차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주차장 출입구 진출입 방해 행위 시 1차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입법예고 중 (‘26.7.6. 공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및 갈등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지자체장이 법령 해석 및 협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수행 등에 따른 지정 취소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추진실적 보고 의무 규정 •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인·허가·승인 등 내용에 관한 사항(제9조제3호)을 삭제하여 업무 중복 정비	입법예고 중 (‘26.7.3.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리츠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에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등의 선분양을 위한 신탁(분양관리신탁) 내용 포함 허용 • 리츠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간접 운영 사업 유형에 '양로시설 운영사업' 추가 •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리츠의 부동산증권 범위 및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증권에 포함 • 법률 개정에 따라 영업인가 변경 보고사항 중 '정관의 변경' 등 중복 조항 삭제 정비	입법예고 중 (‘26.7.3.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주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입법예고 중 (‘26.7.6.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발행위허가 시 무상귀속·양도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공유재산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된 경우 또는 일반재산이면서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 - 개발행위로 인해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한해 무상귀속·양도할 수 있도록 요건 신설 - 새롭게 설치하는 신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 또는 양도 허용 - 신규·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이나 허가 행정청이 다르거나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무상귀속·양도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시	입법예고 중 (‘26.7.9. 공고)
	「건축법 시행령」	- 수직 설비배관이 크고 수가 많아 일률적인 층간 방화구획 적용이 어려웠던 반도체공장에 대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설비배관 전용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 완화 - 법령 본문 내 인용 문구의 오타(따옴표 공백 등) 수정 - 영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 완화 규정 적용 가능(적용례 마련)	입법예고 중 (‘26.7.15.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수의계약 허용 - 페이퍼컴퍼니 의심 등 부실 입찰자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혜택을 미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 대상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가격 투찰 쏠림 현상 개선 - 적격심사 평가 시 가격 및 이행능력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규정 변경 - 무분별한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해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규정 신설	입법예고 중 (‘26.7.21. 공고)
	「기상법 시행령」	-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특보에 '중대경보' 단계를 신설하고,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규정 - 폭염 특보의 종류에 '열대야'를 신설하여,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 기준값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 주의보 발표 기준 마련 - 한파 및 폭염 특보 발령 시, 기존의 사문화된 특보 기준을 삭제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6.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법체계 정비를 위해 인용 조문 수정(제13조의2 삭제에 따라 제2조의2로 변경) - 민간투자시설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임차 희망자에게 관련 내용 서면 고지 의무 및 변경 시 14일 이내 재고지 규정 신설 - 임대기간, 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소재지·면적 등 주무관청 신고 사항 규정 및 계약 체결·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고지 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할 과태료 기준(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 신설	입법예고 중 (‘26.7.7.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기본·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 포함 사항을 현실화하여, 파악이 어려운 '설계 조건' 등 대신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및 이동계획'을 반영하도록 정비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안전검사 주기(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실시, 이후 2년마다)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신설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한해, 12개월 이내 검진을 받은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기준 완화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의사 1명당 연간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 합계가 1만 3천 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 정비	'24.7.1. (일부 규정 '25.1.1. 및 '26.6.26.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된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명확히 규정 -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 시간만큼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면제하여 중복 부담 완화	입법예고 중 ('26.7.6.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가능 구역을 기존 관할구역에서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확대하여 추가 지정 신청 허용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벌목작업'을 신규 추가하고 임업기계 특성, 안전거리 등 세부 교육내용 규정 -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비상연락처 및 대피용 기구 위치·사용법 등을 추가하고, '화재감시 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으로 명확화 - 기타 인용 조문 오류 정비 및 오타("위험성" → "위험성" 등) 수정을 통한 현장 혼선 방지	입법예고 중 ('26.7.14. 공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 기준 명확화('120cm 이하' → '120cm 미만 지점')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위험요인(감전, 전도, 붕괴 등)을 명시하고 주변 시설과 적정 간격 유지 의무 신설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에게 본질적 업무(불꽃·불티 비산 확인 및 화재 감시)를 명확히 부여 - 오·폐수 및 분뇨 등에 의한 인화성 가스(메탄 등) 발생 우려 지하작업장을 가스 농도 측정 대상으로 구체화 -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중 외부 누출 위험이 없는 경우 파열판 우선 설치 대상을 제외하여 규제 합리화 및 화학설비 사용 전 안전장치 점검 명문화 - 벌목작업 시 추구 위치 기준(나무 지름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 및 경사지 조재작업 시 목재 굴러떨어짐 방지 조치 추가 - 한파 정의 신설 및 한파 노출 장소 작업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사전 안내, 보온용품 착용 지도, 휴식 배분, 소방관서 신고 등) 의무 부과 - 건설 관련 용어 통일('건설물' → '건축물등', '가설 철구조물' → '가설구조물') 및 인용 법률 정비	입법예고 중 ('26.7.14. 공고) (단, 한파 관련 산안법 개정은 '24.10.22. 시행 연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인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 기준 우선 공급 근거 신설 - 우선공급 대상 요건으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할 것 규정	입법예고 중 ('26.7.1.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구조에만 적용되던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다른 품질인정 자재까지 확대하여, 성능확인·품질인정 기준이 없는 신제품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자동방화셔터 3미터 이내 별도 방화문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화문 설치 면제 허용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항목 중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관리 서 번호 및 시공량 등 필수 정보를 추가하여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 변경(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법령 인용 오류·오타 정비	입법예고 중 (‘26.7.15.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해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 또는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담합 재발 억제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상향 - 공공계약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 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2개월'로 신설	입법예고 중 (‘26.7.21.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신설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입찰 적용 - 종전 시·도 관할구역 내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 근거 명확화	'26.7.1.
행정 규칙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도모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상한을 기존 '20퍼센트 미만'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건설비율 하한을 기존 '8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6.7.3.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추진 시,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의무 신설 - 공사 현장이 2개 이상 소관청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내역서상 금액 비중이 큰 관할지역의 소관청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사무분장 기준 명확화 - 소액수계약 우대 대상자(수요기관 추천)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견적경쟁) 참여 지역업체 대상에 '사회적기업' 신규 추가	'26.7.1.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임 대상규모 및 컨설팅 업무 기준을 총공사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현실화 - 사업 전 과정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의 정의 및 운용 근거 신규 신설 - 약정체결 후 설계 미발주 또는 정지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장기간 중지사업에 대한 조달청장 직권 약정 해지 사유 구체화 -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특수시설, 전시설 등의 설계용역을 기술용역 계약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범위 조정 - 기존 내부정보화시스템(EDI) 명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달수수료 고시'로 명확화	입법예고 중 (‘26.7.14. 공고)
		「조달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요건을 '입법예고 중	입법예고 중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과 책임연구원급까지 확대 •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제한(분야별 50% 이하)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전문분야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분야별 제한을 미 적용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위원의 제척 및 교섭정지 등을 의결하는 내부 기구 명칭을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로 현행화하고 자구 오류 정비	('26.7.14. 공고)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신간 구입 및 도서 공간 부족 등 필요시, 기존 단일 사업으로 묶였던 도서 구매의 분할 발주(계약) 근거 마련 • 통합특별시 신규 설치에 맞추어 관련 예규 내 행정 용어 정의 신설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시, 통합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된 경우 지역제한 범위를 '해당 시의 자치구 전체'로 적용토록 단서 조항 개정 • 새로운 시·도(통합특별시) 설치 시, 설치일로부터 3년간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을 종전 시·도 관할구역으로 유지하여 적용	'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서점의 공공 수주 확대를 위해 간행물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 가점(중소기업 1점,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협동조합 1점 등 최대 2점) 신규 신설 • 통합특별시 신규 설치에 맞추어 관련 예규 내 행정 용어 정의 정비 • 새로운 시·도(통합특별시) 설치 시, 공동수급체 가산평가 등을 위한 지역업체 기준을 설치일로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으로 유지하여 적용	'26.7.1.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결정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는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및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배제	행정예고 중 ('26.7.16. 공고)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개정 • 정상자가상승분 및 조기 납부 환급액 산정 이자율 : 연 1천분의 25(연 2.5%) •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가산금 산정 이자율 : 연 1천분의 31(연 3.1%)	'26.7.1.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실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온도차이비율(TDR) 계산식의 '외기'를 '실외'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역별 실외온도 기준을 기존 지역Ⅰ·Ⅱ·Ⅲ(-20℃, -15℃, -10℃)에서 중부1·중부2·남부 체계로 개편 • 시스템 창호 및 커튼월에 대한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및 산정위치 신설 • 성능평가 신청 절차(사업주체 또는 건축사 날인, 5일 이내 보완 요청 등)를 명문화하고 관련 서식(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신설 • 컴퓨터 시뮬레이션 관련 ISO 등 인용규격 현행화 및 성능평가 기관 명칭 정비(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등)	'26.6.2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조정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290으로 변경 • 지상층건축비 및 지하층건축비(1,183천 원/㎡) 인상	'26.7.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고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동에 맞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별표 1] 개정 • 지상층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 60~85㎡ 기준) 항목별 세부 내역 : 직접공사비 1,459천 원/㎡, 간접공사비 604천 원/㎡, 설계비 28천 원/㎡,	'26.7.15.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감리비 20천 원/㎡, 부대비 126천 원/㎡ 지하충건축비 항목별 세부 내역 : 직접공사비 825천 원/㎡, 간접공사비 331천 원/㎡, 설계비 16천 원/㎡, 감리비 11천 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현실화를 위해 주택법 및 규칙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활용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조정 개정 -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부가가치세 제외) : 고강도철근(ton당 990,000원), 레미콘(㎡당 90,563원), 알루미늄거푸집(㎡당 3,315원), 강화합판마루재(㎡당 17,500원), 로이복층유리(㎡당 59,400원) 등	'26.7.1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방지 및 공정한 수주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발주자가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예정금액 대비 해당 적용 금액 및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의무 기재하도록 규정 -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공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된 공사의 업종 및 구성비율 공고문 기재 의무화	행정예고 중 (‘26.7.2. 공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 선정,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 부여 및 증빙자료 제출 절차 마련 - 매년 11월 30일까지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3년간 게재·공표 - 체불액의 2/3 이상 청산 및 1천만 원 미만 잔액에 대한 청산계획 소명, 등 록말소, 화생·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및 사후 명단 삭제 절차 규정	행정예고 중 (‘26.7.21. 공고)
지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 건설공사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 사항에 '지장물 철거', '토석·사토의 운반', '가시설공사(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상 부담 완화 - 제4조제1항제1호의 "해체하는"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토석·사토의 운반 및 가시설공사 추가	행정예고 중 (‘26.7.2. 공고)

구 분	자료명	주요 내용	제정일
실무 매뉴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 총칙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건설안전관리비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산단 계상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의 비교(목적·항목·원가계산 차이) 체계화 -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비용, 안전점검 비용(정기·초기), 주변 피해방지대책 비용,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안전 모니터링 장비(계측기·CCTV) 설치·운영 비용,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 무선설비·통신 구축 비용 등 7대 항목별 산정기준 및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시 - 집행 및 정산 : 사용기준, 총괄 및 항목별 집행 내역서 서식,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계상 기준, 객관적 증빙서류에 따른 사후 정산 방법 규정 - 기타 및 부록 :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미계상 및 부정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전관리계획서 집행계획 분석, 우수·미흡 계상 사례 비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및 계상·집행 내역서 서식 제공	'26.6.30.